

제9장 민원, 지적, 토지관리, 민방위행정

제1절 일반민원

제2절 지적·토지관리 행정

제3절 민방위행정

제1절 일반민원

1. 민원봉사실 운영

삼척시 종합민원실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정부3.0시대에 걸맞는 고품질 국민행복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절한 민원응대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실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봉사과 6개 부서(민원, 가족관계등록, 토지관리, 지적,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교통행정과 1개부서(건설기계등록, 자동차등록), 건축과 1개부서(건축물관리), 세무과 민원창구 직원 2명, 도시과(제증명) 1명,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 1명이 배치되어 총 5개과, 1공사 12개 창구로 운영되고 있고, 총4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NH농협은행 삼척시청 출장소가 운영되어 시금고 업무추진과 시민편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삼척시청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정보 제공과 아울러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 외부에 무인민원발급365창구를 설치하여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소외계층 민원방문 시 성실히 안내하고 있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의식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시설(북카페, 건강쉼터, 시민행복사랑방·수유실, 실외휴연실, 화장실, 홍보용 전광판 등) 확충, 전용 주차장 운영, 민원전용 사무기기(민원24, 민원편람) 등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와, 개선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24』,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허가민원전담창구 운영 등 각종 민원 시책 홍보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축으로『시민중심! 행복 삼척』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민원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현황

연도별	시 설 내 역	비 고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민원인 전용의자 등 교체) • 홍보물·리플릿 꽃이대 비치 • 민원안내 현황판 교체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휴대폰 충전기, 자동혈압측정기, 비상구급약품세트 등 비치 • 도서, 안마의자, TV, 비만도측정기 등 비치 • 민원인 전용 사무기기 비치 - 팩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기 등 • 110수화(화상)통역서비스 연계 창구 운영 	

연도별	시 설 내 역	비 고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알림판 설치 • 민원실 물품보관창고 및 지적서고 리모델링 • 민원인 편의시설(북카페, 건강쉼터, 실외흡연실, 시민행복 사랑방 · 수유실, 화장실 등) 설치 및 교체 • 무인민원발급365창구 설치 · 운영 •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스마트폰 살균충전기 비치 • 민원24, 민원편람 민원인 전용 PC 등 사무기기 비치 •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허가민원전담창구” 설치, 운영 	

민원창구별 주요 민원업무 처리내역



- ①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여권
- ② 민원접수 / 어디서나 민원 / 민원1회방문처리 / 전자민원
- ③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 ④ 건설기계등록
- ⑤ 자동차등록
- ⑥ 세무(납세증명)
- ⑦ 취득세 · 등록세 신고
- ⑧ 지적측량 접수 등
- 허가민원전담창구
- ⑨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면 교부
- ⑩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신청, 토지거래검인
- ⑪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청
- ⑫ 건축물대장 교부

2. 주민등록 관리

가. 주민등록 세대 및 인구현황

1987년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탄광촌과 농촌의 인구가 매년 3%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통합시 개청 당시 89,986명의 인구가 2016.12.31. 현재 69,599명으로 20,387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시에서는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이후 대규모 국책사업유치로 기업체 직원과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전입으로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년 인구 20만 늘리기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삼척시의 주민등록인구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읍면동별 인구현황

(단위:세대,명/15.12.31기준)

읍면별	세대수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계	34,601	70,839	36,000	34,839	
도계읍	7,502	12,870	6,495	6,375	
원덕읍	3,333	5,869	3,060	2,809	
근덕면	3,155	5,818	2,969	2,849	
하장면	707	1,391	737	654	
노곡면	440	793	423	370	
미로면	983	2,047	1,052	995	
가곡면	431	752	378	374	
신기면	404	734	401	333	
남양동	4,233	9,166	4,533	4,633	
성내동	3,868	9,087	4,505	4,582	
교동	4,703	11,418	5,907	5,511	
정라동	4,842	10,894	5,540	5,354	

2016년 읍면동별 인구현황

(단위:세대,명/16.12.31기준)

읍면별	세대수	인구수			비고
		계	남	여	
계	34,147	69,599	35,253	34,346	
도계읍	7,279	12,393	6,229	6,164	
원덕읍	3,215	5,631	2,903	2,728	
근덕면	3,127	5,708	2,907	2,801	
하장면	690	1,354	714	640	
노곡면	441	787	422	365	
미로면	975	2,008	1,025	983	
가곡면	441	742	369	373	
신기면	385	691	372	319	
남양동	4,173	8,884	4,411	4,473	
성내동	3,926	9,194	4,529	4,665	
교동	4,668	11,394	5,874	5,520	
정라동	4,827	10,813	5,498	5,315	

나.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장비 및 전산자료의 완벽한 정비·점검을 위하여 매년 4회(분기)에 걸쳐 읍면동 및 출장소별로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에 대한 사실조사와 최고·공고·직권초지 등 행정절차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중점 정리하였으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정비·점검 병행추진으로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 외국인 등록

2016년말 현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행, 친지방문 및 거주, 구직·국제결혼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적별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계	중국	베트남	일본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타
2015	695	125	233	38	11	26	25	67	170
2016	772	146	254	39	12	32	34	60	195

4. 가족관계 등록 관리

가. 제적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운영

2002.02.25. 호적 전산화 사업의 완료 후 2005년 03월부터 12월까지 제적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2006.03.15부터 호적, 제적부 및 제재부의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7.05.17 법률 제83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 01. 01시행된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제도 신설에 의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증명 목적에 따라 5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개인 정보공개 최소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나. 가족관계등록 인구현황

2016년 12월말 현재 삼척시의 가족관계등록 인구수는 173,236명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관별	구분	가족관계등록인구수	비고
	계	173,236	
	본청	54,018	
	도계읍	32,081	
	원덕읍	23,272	임원출장소 포함
	근덕면	28,454	
	하장면	8,518	
	노곡면	5,987	
	미로면	11,561	
	가곡면	4,737	
	신기면	4,608	

다.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처리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은 2015년 3,590건, 2016년 3,765건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민원은 매년 비슷하며,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직권정정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 접수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민원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15		3,590	438	594	299	127	254	1,587	291
2016		3,765	372	589	266	134	290	1,867	247
연도별	기관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15 년도	본 청	1,745	330	316	221	113	131	462	172
	도계읍	616	42	84	28	7	50	351	54
	원덕읍	404	32	55	25	4	27	227	34
	근덕면	326	12	75	12	1	21	200	5
	하장면	85	5	12	3	0	8	52	5
	노곡면	72	2	9	2	0	3	54	2
	미로면	205	7	20	4	2	7	155	10
	가곡면	68	1	11	1	0	3	48	4
	신기면	69	7	12	3	0	4	38	5
연도별	기관별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2016 년도	본 청	1,848	309	284	188	123	155	622	167
	도계읍	597	30	88	33	6	58	353	29
	원덕읍	357	12	67	25	3	16	220	14
	근덕면	450	6	74	11	2	31	319	7
	하장면	126	3	16	1	0	6	95	5
	노곡면	92	1	8	0	0	8	70	5
	미로면	164	9	26	7	0	11	96	15
	가곡면	56	1	16	0	0	0	37	2
	신기면	75	1	10	1	0	5	55	3

5. 여권 관리

삼척시 종합민원실 1번 창구에서 여권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와 신청서 접수 및 교부하고 있으며, 2005년도 1,893건에서 2010년도 3,529건으로 증가하였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2011년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여권의 보편화로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하게 여권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권신청 현황

연도별	신청 건수	여권종류별		관용	비고
		단수	복수		
2015	3,664	384	3,280	0	
2016	4,420	338	4,082	0	

6.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

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며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원업무 처리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원후견인 제도의 운영

분야별 지식이 풍부한 담당급 40명을 지정하여 복합민원 및 노약자, 장애인, 연소자등의 민원을 대항함으로써 민원의 접수에서 종료까지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 통보하고,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및 민원서류의 보완, 타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를 수행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하여 One-Stop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해당 실과소에서 대부분 처리되며 복잡한 업무처리과정으로 인해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특성상 신속성과 상충되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현황

(단위: 명, 건)

연도별	후견인수	실제활동	처리 실적				비고
			소계	수용	거부	처리중	
2015	40	40	0				
2016	40	40	0				

2)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으로,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관련부서별 처리방안 검토 및 기타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을 필요시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실적을 보면 2015년도 13회, 2016년도 8회 개최하였다.

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삼척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의거 총 14명(공무원 13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 사안과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민원처리부서 지정, 법령검토 및 제도개선 등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민원1회방문처리 창구를 통하여 복합·단순·고충 민원의 접수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원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해결)	처리 불가					
				계	불가	반려	취하	이첩·이송	기타
복합	2015	2165	1939	226	4	104	114	0	4
	2016	2386	2151	235	1	104	114	0	16
단순	2015	15586	15242	344	15	95	114	11	109
	2016	16244	15859	385	19	179	113	6	68

연도별	구분	접수	처리 (해결)	처리불가					
				계	불가	반려	취하	이첩·이송	기타
고충	2015	162	140	22	3	0	3	15	1
	2016	82	68	14	5	0	1	6	2

분야별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문화 공보	회계	주민 생활 지원	사회 복지	민원 봉사	환경 보호	지역 경제	농업 정책	산림 녹지	건설	도시	교통 행정	건축	해양 수산	상하 수도	기타 (읍면동 포함)
2015	2364	25			274		88	4	23	146	220	740	30	280	161	39	334
2016	2927	14			275		148		21	102	235	875	53	288	232	24	660

나.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민원인에게 법령상 규정된 구비서류 외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각 기관은 행정정보공공이용대상, 기관 내부 확인 가능한 자료 목록 등을 민원실에 게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정보공유를 해 왔다.

다. 『민원처리기간 자체단축』확대 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제」시책으로 법정처리기간 2일이상인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40%이상 자체 단축을 목표로 하여 2015년도 550종, 2016년도 550종을 자체 단축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의 법정처리기한이 남아 있음으로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함으로써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인·허가 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운영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문화	총무	회계	주민	사회	민원	환경	관광	지역
2015	1524	23				11		83	4	4
2016	1794	24				15		124	4	
연도별	농업	산림	건설	도시	교통	건축	해양	보건	상하수도	기타
2015	23	140	184	560	29	139	110	11	39	164
2016	19	80	167	666	45	62	138	13	24	423

라.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1) 어디서나 민원(fax) 발급제도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민원24』(www.minwon.go.kr)내에 별도로 구축한 업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간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팩스,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를 받을 수 있는 민원발급제도이다.

취급민원은 민원24 온라인 민원발급사무 현행 119종이며, 발급시간을 현행 3시간 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단축 처리하여 주고 있다. 우리시에 어디서나 민원 발급실적은 다음과 같다.

FAX민원 발급처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계			본 청		읍면동출장소	
	계	신청	처리	신청	교부	신청	교부
2015	6649	3356	3293	233	281	3123	3012
2016	8761	4424	4337	307	250	4117	4087

2) 전자민원『민원24』시스템 구축

각 부처의 민원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5,000여종의 민원안내와 구비서류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3,000여종의 서류를 확대 가능한 모든 민원을 온라인하여 오고 있다. 인터넷민원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는 금융거래용『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즉시발급민원의 확대로 온라인 민원신청은 현저히 확대되고, 어디서나(FAX)민원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시의 민원24 신청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원24 발급처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민원24 (온라인)	창구민원발급			온라인신청률 (%)
		계	주민등록시스템	기타	
2015	79,719	323,107	131,525	191,582	24.67
2016	71,273	323,321	127,076	196,245	22.04

3)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인 제출서류 최소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훈, 병무, 법무 등 32개 보유기관의 153종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공무원이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용대상정보현황을 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상호 정보공유를 해 왔고, 민원인이 민원서류 제출시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였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정보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 계	공동이용 대상정보						
		지방세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 납세증명	자동차 세납세	폐업 사실증명	등기정보 열람	기타 (건축물대장외)
2015	24,865	31	309	20	-	145	8,583	15,768
2016	38,015	40	147	40	-	87	20,618	17,083

마. 민원행정서비스현장 성실 이행

2000. 6. 29일 1차 개정 공표되어 운영중인 민원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하여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사항,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증명민원(FAX민원 신청 등)의 법정처리 시간보다 20%이상 단축 운영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고, 이행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2004년도 개정 공표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만족사항 등 민원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현장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2절 지적·토지관리 행정

1. 지적제도의 연혁

근대적인 지적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1910년 8월에 토지조사법을 제정한 후 약 40년만인 1950.12.1.(법률 제165호)에 총 41개 조문의 지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까지 시행한 지적법과 지세법을 분리 제정하고 조선지세령, 조선임야대장규칙을 폐지하였다.

제정된 지적법은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정리를 각각 서로 다른 법령에서 수행하던 것을 일괄 수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8여회에 걸쳐 법령이 개정되어 오다가 측량·수로업무 및 지적분야의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통합하고자 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던 주소가 각종 도시개발과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위치 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되므로 지번주소체계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국민들이 주소와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존 토지지번 주소체계에서 도로명을 기준으로 건축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새로운 주소체계 변경에 관련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통일 적용하고자 2006.10.4.(법률 제8027호) 지적법에서 개정 삭제하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9.4.1. 제명을「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하였다. 2014.1.1.일부터 과거 사용하였던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전면 전환되고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적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구)건설교통부의 측량법, 해양수산부의 수로업무법, 행정자치부의 지적법으로 분산, 운영되어온 국토조사측량관련 3개법을 통합한「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9.06.09(법률제9774호) 시행하게 되었으며, 2015.6.4.(법률 제12738호) 제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지도공급 및 복제절차 간소화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융합한 측량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측량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적 및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지적행정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로 통합하여 분야별로 나뉘어 처리하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처리할수 있게 되었으며 15종의 부동산 관련 종합증명서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적공부 등록현황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적공부는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소유권 등이 등록되어 있다.

지목별 등록현황

구 분	합 계	전	답	대	공장용지	임 야	도로용지	기 타
지번수	147,311	36,291	14,956	20,928	244	29,278	28,080	17,534
면적(km ²)	1,187.00	56.46	15.16	8.04	1.70	1,044.83	17.62	43.19
비율(%)	100	4.76	1.28	0.68	0.14	88.02	1.48	3.64

행정구역별 등록현황

읍면동	합 계		토 지		임 야	
	지번수	면적(km ²)	지번수	면적(km ²)	지번수	면적(km ²)
합 계	147,311	1,187.00	116,781	140.27	30,530	1,046.73
도계읍	15,725	164.72	12,083	17.43	3,645	147.29
원덕읍	26,520	176.71	21,952	21.84	4,568	154.87
근덕면	30,430	133.68	24,455	25.26	5,975	108.42
하장면	13,951	205.71	10,530	21.86	3,421	183.85
노곡면	9,737	144.71	6,961	8.71	2,776	136.00
미로면	15,237	99.36	11,680	13.73	3,557	85.63
가곡면	5,832	152.37	5,023	6.99	809	145.38
신기면	6,625	56.35	5,398	6.58	1,227	49.77
성내동	8,590	22.66	6,360	5.85	2,230	16.81
교 동	5,140	9.52	3,991	5.49	1,149	4.03
남양동	6,729	18.19	5,726	4.70	1,003	13.49
정라동	2,795	3.02	2,622	1.83	173	1.19

대장 현황

(단위: 매)

구 분	합 계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합 계	160,058	124,267	34,312	1,479
대 장	147,633	115,901	30,253	1,479
공유지연명부	12,415	8,366	4,059	0

도면 현황

(단위: 매)

구 분	합 계	지적도	임야도	비 고
합 계	4,402	3,866	536	
도 면	4,113	3,581	532	
일람도 · 색인표	289	285	4	

3. 지적민원 관리

삼척시의 지난 2년간 지적민원은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에 8070건, 보존 · 이전등 소유권 변동 정리에 25,100건, 대장등본 및 열람발급에 60,00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다.

토지이동 정리

(단위 : 지번수)

연도별	합 계	분 할	합 병	지목변경	기 타
2015	4,533	2,402	793	458	880
2016	3,537	1,774	441	472	850

소유권변동 정리현황

(단위 : 건수)

연도별	합 계	보 존	이 전	기 타
2015	11,767	372	5,323	6,072
2016	13,333	441	6,856	6,036

등본 및 열람발급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합 계	대 장	도 면	맞춤형	기타
				종합형	
2015	21,603	15,561	5,256	129	319
				338	
2016	38,401	26,803	7,033	36	4,298
				204	

4.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토지는 자연적, 인문적 특성에 의해 균형가격의 성립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일반토지거래의 지표와 보상, 조세부과 등의 기준이 되게 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공시지가 체제는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및 재무부의 감정지가 등 부처별로 행정목적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해 다원화된 공시지가 체제였다.

그 결과 상호 연계성이 결여되어 객관적인 가격수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관된 지가정보의 구축이 어렵고, 기관별로 지가를 조사·평가함에 따라 인력 및 재정낭비를 가져왔으며, 동일토지에 대하여 지가가 상이하여 공적지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웠으나, 종전 지가체제를 통합하기 위하여 '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다. 2005.1.1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되어 오다가, 2016. 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일관성 있는 지가조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읍·면·동별 지가조사체제에서 1997.7.15. 시체제로 전환하여 지적과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조사를 전담하여 전문성과 지가의 균형유지 및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현재는 1999.9.17 행정기구 개편으로 민원과의 지적과를 통합하면서 민원봉사와 토지관리부서에서 지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성, 중용성, 안전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다. 선정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거래의 지표로 지가정보를 제공,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시 전체 조사대상 필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규모 및 용도지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지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목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 : 필지수)

연도별	계	전	답	대	임야	기타
2015	2,041	702	268	649	389	33
2016	2,041	702	269	649	388	33

용도지역별 표준지 분포현황 (단위 : 필지수)

연도별	계	도 시 지 역				비 도 시 지 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미지정
2015	2,041	336	108	49	274	988	249	37	0
2016	2,041	336	108	49	273	989	249	37	0

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의 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배율을 적용·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에는 매년1회 1.1. 기준으로 당해연도 6.30. 결정고시 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6.30. 결정고시하고,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필지에 대하여 7.1.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10.31. 결정고시하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자로 변경하여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부과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필지는 우리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 표준지와 도면 미복구된 토지 등은 제외시킨다.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 현황

(단위 : 필지수)

연도별	전 체 (A)			조사대상(B)			비율 B/A	비고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2015	146,154	114,231	31,923	143,904	94,043	49,861	98.5	
2016	146,938	96,358	50,580	144,696	94,073	50,623	98.5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공적규제에 관한 공부 및 기타자료를 확인하고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대상 토지의 특성을 정확히 조사한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택하고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서 가격배율을 추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를 20일 동안 실시한다.

산정 및 검증필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친 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날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지가를 확정한다.

5.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운영

토지행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제도의 질적 향상과 토지의 다목적 정보화를 필요로 하는 추세에 맞춰 1983년부터 지적전산 운영체제를 도입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89년부터 온라인망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 하였으며, 지적행정시스템의 운영체제를 2001년 5월도스(DOS) 시스템에서 윈도우즈(Windows)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자료 검색 및 변동자료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토지(임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적도면을 과거에 종이로 작성되어 사용하던 것을 전산도면으로 등록 관리할 수 있게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을 1999년~2003년까지 추진하여 4년간 지적도면 총 3,888매를 2003년 10월말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2004년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도면전산화가 구축됨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기본정보와 정책정보 자료 제공 등 관련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계기를 마련하였다.

사회구조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종합적인 토지정보 제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구축 하였고 지적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과 토지행정에서 창구민원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원을 통합 발급하여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분산되어 관리되던 부동산 관련 공부들을 일원화 하여 부동산 융합 행정을 실현하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2011년 의왕, 김해 등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 위험 요소를 제거하였고, 2012년 지적과 건축물 분야의 11종 증명서를 먼저 통합하여 시스템을 전국에 설치하고 KLIS와 병행운영 한 후 2013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등 총 15종의 증명서를 통합하고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을 실시하였다.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2013.07.17 개정 공포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4.01.18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전환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운영 및 대국민 서비스를 조기에 안정화 하였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적행정시스템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부관리의 일원화를 이루고 업무의 추진도 빨라졌다.

병행운영 실시 기간을 두어 기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전량 병행처리 하였으며 병행운영 실적을 국토교통부 사업단에서 취합·분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 이중 확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 시스템내 구축 D/B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2014.01.18 정상적인 실제 운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 운영전환 세부계획

구분	일정	수행내역	담당	
1단계 병행운영	'13. 9. 9 ~ '14. 1. 17	지적업무 100% 병행운영 * 기존 :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병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군구 업무담당자	
		업무처리현황 모니터링	전국 일일자료 취합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사업단)
			일일마감 모니터링	시군구 업무관리자
		일사편리 콜센터 운영	사업단	
2단계 병행운영	'13. 11. 11 ~ '14. 1. 17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가격업무 100% 병행운영	시군구 업무담당자	
		부동산종합증명서 온라인 시범발급 ('13. 12. 2~)	사업단	
		온라인 통합민원창구 17개 기관 실운영 ('13. 12. 2~)	사업단	
		업무처리현황 모니터링	전국 일일자료 취합 모니터링	국토교통부(사업단)
			일일마감 모니터링	시군구 업무관리자
일사편리 콜센터 운영	사업단			
실운영 전환	'13년 11월	운영전환 안내 (온나라 포털 등 활용)	사업단	
	'13년 12월	시군구 환경점검	국토교통부	
		모의전환 실시	사업단, 유관기관	
	'14년 1월	시스템 점검	사업단	
		통합지적,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관리 실운영 개시	시군구 업무담당자	
		실운영 전환 확인서 제출	시군구	
	'14년 7월	가격관리업무 실운영 개시	사업단	
실운영 전환 확인서 제출		시군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기능 구성

프로그램	기능 구성
1. 토지이동	토지이동접수, 지적공부정리관리, 토지이동정리, 변동자료정비, 민원접수현황관리, 대단위토지이동, 지적재조사 관련
2. 측량업무	지적측량업무관리, 바로처리센터 연계, 지적측량성과관리C/S 등
3. 소유권변동	소유권개별처리, 대법원등기연계 등기변경자료 관리
4. 종합공부조회	토지(임야)기본조회, 지적기준점, 도곽, 지적공부오기정정, 건축물정보조회, 통계관리, 정책지원 등
5. 건물통합	건물통합정보 등록/수정/삭제, 건물위치 통합정보 관리 등
6. 창구민원관리	토지(임야)대장 발급 및 열람, 인터넷 민원접수현황관리
7. 비법인관리	등록번호별등록사항조회, 등록증명서발급, 등록사항변경, 단체현황조회, 민원접수내역조회 등
8. 시스템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권한관리, 코드/연계관리, 로그관리, 사용현황관리 등
9. 부가기능	운영지원센터, QnA, FAQ, 공지사항

2)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지적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훼손 방지 및 토지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적 문서 전산화사업을 실시하여 지적원부 408,925매(부책식대장 116,023매, 카드식대장 146,451매)를 예산 115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도에 완료하였고,

토지이동결의서의 7종 및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한 전산화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08년~2016년까지 9개년에 걸쳐 전산D/B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전산화사업 이후 매년 생산된 문서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적으로 전산D/B를 구축하여 지적문서통합시스템에 탑재 운영함으로써 열람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다.

지적문서 전산화

(단위 : 매)

구 분	2014년 이전	2015년	2016년	비 고
계	69,501	9,070	8,920	매년 생산된 지적문서는 이듬해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추진
토지이동결의서 외 7종	39,826	7,200	7,270	
지적측량결과도	29,675	1,870	1,650	

6.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 추진

시에서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분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이동으로 인한 표시변경 등기 시 소유자가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소요되는 행정·시간적 비용과 법무사 대행 시 드는 수수료(필지당 50,000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또한 토지이동 발생 분 이외 불일치(면적, 지목상이)대상 토지에 대하여도 꾸준히 촉탁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 현황

년도	합계		분할		합병		지목변경		기타	
	건	필지	건	필지	건	필지	건	필지	건	필지
2015	2,249	4,918	991	2,973	229	916	819	819	210	210
2016	1,607	2,817	604	1,532	292	574	519	519	192	192

7. 개발이익환수제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이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률(25% 또는 20%)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는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나,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제3절 민방위행정

1. 민방위 조직 및 편성

가. 민방위 조직

지방단위 민방위 조직은 도의 비상기획과에 위기관리부서가, 시에는 안전총괄과내 민방위부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는 민방위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어 도지사 소속하에 도 민방위협의회를, 시장 소속하에 시 민방위협의회를,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도 민방위협의회는 10인 이상 15인내로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 민방위협의회는 7인 이상 12인내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읍면동 민방위협의회는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주요 기능은 도 및 시 민방위협의회에서는 민방위 계획의 심의와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기타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나. 민방위 편성

1) 편성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하며 17세 이상의 남녀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다. 20세~25세 남자중에서 민방위대 편성이 제외되는 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당연 제외자와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에 의한 제외자로 구분한다. 법령에 의한 당연 제외자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찰, 소방공무원, 학생, 군인, 향토예비군 등이 있으며 심사제외자로는 의사의 진단에 의한 심신장애자와 만성허약자 등이 해당한다.

《 민방위대편성 현황 》

(단위 : 대, 명)

연도별	계		통리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대수	대원수
2015	207	4,092	179	3,324	1	75	27	693
2016	210	4,046	182	3,226	1	75	27	745

2) 편성기준

민방위대의 조직은 통·리 단위로 각각 편성하고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수방, 의료, 전기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 기술을 가진 민방위대원 중에서 읍면동장 및 직장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발한 자로 편성한다.

민방위대는 대원수에 따라서 편성기준을 달리 하고 있으며, 20~39인 이하는 분대, 40~80인 이하는 소대, 81~300인 이하는 중대, 301~1,000인 이하는 대대, 1,001인 이상은 연대로 편성하였다. 통·리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 통·리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 대, 명)

연도별	대 수	대원수	규 모 별 현 황					
			계	20~39	40~80	81~300	301~1000	1,001인이상
2015	179	3,324	179	152	17	10	-	-
2016	182	3,226	179	156	15	11	-	-

직장민방위는 직장의 사무소 또는 사업단위로 편성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로서 조직하고, 직장 민방위대장은 당해 직장의 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시청의 직장민방위 대장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해 총괄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하므로 부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 직장민방위대 편성현황 》

(단위: 명, 대)

연도별	대 수	대원수	규 모 별 현 황					
			계	20~39	40~80	81~300	301~1000	301~1000
2015	27	693	27	22	0	5	-	-
2016	27	745	27	20	2	5	-	-

민방위 기술지원대는 창설 당시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였으나 기술지원대의 전문성을 살리고 활동면에서도 광역화하여 시 단위로 재구성하였으며, 규모는 지역특성을 고려 100 ~ 200명 선으로 구성하고 편성 인원은 다음과 같다.

《 기술지원대 편성현황(기능별) 》

(단위: 명)

연도별	계	소화	상황전파	복구	인명구조	화생방	비상대피통제	안전사고	위험지구예찰	기타
2015	75	14	10	10	10	20	10	-	-	1
2016	75	14	10	10	10	20	10			1

《 민방위대원 연령별 현황 》

(단위: 명)

연도별	계	20세이하	21세~25세	26세~30세	31세~35세	36세~40세	41세~50세
2015	4,079	0	83	124	1,538	1,936	398
2016	4,046	0	152	129	1,488	1,825	452

2. 을지연습 운영

가. 을지연습

전시대비 총무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써 비상사태시 전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위기관리 능력강화 및 군·관 협조하에 전쟁수행 체계 확립과 시민에 대한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 을지연습 사건처리 현황 》

(단위: 건)

연도별	처리건수	사태별자동조치	중앙사건 처리	도사건 처리	자체사건 처리	비 고
2015	101	-	-	-	101	
2016	101	-	-	-	101	

나. 실제 훈련상황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 시 직원의 시간대별 응소 능력을 점검하였고, 다중이용시설 테러·화재대피훈련, 국가주요시설 방호·테러 대비 통합훈련 등에 15개 기관·단체·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전시대비훈련과 위기대응훈련을 병행실시함으로써 돌발적인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훈련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또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시 대응능력 및 민·관·군 공조체제를 확립하였다.

3. 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

1) 민방위 교육목표

민방위대원교육은 민방위대원이 민방위 비상사태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신교육 및 제반 실기 지식과 활동 요령을 습득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민방위 대원에게 국가 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대비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와 실기실습을 통한 재난대처 능력을 중점적으로 배양하고, 국가 안보관의 확립을 통한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민방위교육의 기본목표이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연구원 주관하에 실시하는 중앙단위 교육과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단위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2) 민방위중앙교육

후방방위와 재난수습을 위한 정예 민방위 간부요원의 양성을 목표로 민방위 정신전력의 강화를 위한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 사태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고 민방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정보와 지식기술의 보급에 목표를 두고 있다.

《 2016년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교육이수 현황 》

(단위 : 명)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교육과정별	교육인원
계	12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4
민방위강사 교육	1	지원민방위대원 교육	7

3) 지방단위교육

◎ 기본교육 체계

민방위기본법상 민방위대원의 법정교육시간은 연 10일간 50시간의 범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운영은 민방위 편성후 1~4년차 대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씩 4년간 이수하게 되어 있다.

◎ 기본교육 실적

민방위교육은 일반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전문요원교육으로 나누어지고, 일반대원 교육은 통·리민방위대원과 직장민방위대원이 해당되고, 민방위대장 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이, 전문요원 교육은 기술지원대와 화생방분대원이 이에 해당된다.

《 민방위대원 교육실적 》

(단위 : 명)

연도	구분	교육대상 (명)	참 석 실 적(명)				불참 (명)	참석율
			계	기본	1차보충	2차보충		
2015	계	3,223	3,223	2,756	267	200	0	100%
	집합교육	1,370	1,370	1,158	126	86	0	100%
	비상소집 훈련	1,853	1,853	1,598	141	114	0	100%
2016	계	2,931	2,931	2,387	351	187	6	99.8%
	집합교육	1,310	1,310	1,065	155	88	2	99.8%
	비상소집 훈련	1,621	1,621	1,322	196	99	4	99.7%

◎ 교육내용

민방위대원의 교육 내용은 기본교육과 실전훈련이 있다. 기본교육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키고 아울러 국가관, 안보관의 확립과 국민정신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실전훈련은 자연재난, 인위재난, 생명구호, 전시대비 등 유사시의 사태수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 민방위강사 위촉

민방위강사는 시장이 위촉하여 민방위대원교육에 활용하고 있고, 민방위 강사의 자질 및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매년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민방위강사 위촉현황 》

구분	소 속(주 소)	성 명	위촉년도	분 야 별	비고
실기교육	삼척소방서	김이구, 권영민	2015년	재난안전예방대응 심폐소생술	
화생방교육	23사단 화생방지원대	박종민, 정태일	“	화생방	
안보	국가발전미래교육 협의회 강원지회	김나영, 이인호	“	안 보	
실기교육	삼척소방서	김해수, 김영래	2016년	재난안전예방대응 심폐소생술	
화생방교육	23사단 화생방지원대	정태일	“	화생방	
안보	국가발전미래교육 협의회 강원지회	김나영, 이인호	“	안 보	

나. 민방위의 날 훈련

매년 3~4회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예상사태에 대응역량을 배양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의 침공과 각종 재난에 대처하고 자율적으로 국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나아가 전 국민의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여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민방위 구현을 해나가고 있다.

1) 훈련시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정기적으로 년3~4회의 지정한 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15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1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실시하였다.

2) 훈련구분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국가적 사회 대응력을 제고시켰으며, 훈련실시 지역내 지방위요소와 직장·지역 민방위대가 통합 참여하는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였다.

3) 종목별 훈련실적

민방위의 날 훈련은 크게 전국 훈련과 지방단위 훈련이 있으며, 전국 공통은 민방공대피훈련, 불시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특성은 전시대비 훈련과 재난대비훈련으로,

전시대비훈련은 지역·직장 방호훈련, 주민신고훈련, 화생방 방호훈련과 재난대비 훈련은 풍수해, 해일, 산불진화, 설해대비 훈련 등 자연재난대비 훈련과 단전·단수, 통신두절 대비 및 다중 집합장소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유사시 사태대비 능력을 제고하였다.

《 2016 민방위 날 훈련실적 》

(단위: 회)

훈련종목별	실사회수	훈 련 내 용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 가족단위비상대응훈련 화재대피훈련	4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 (자연재해, 인위재난)대비 지역특성화 훈련 - 아파트거주민 가족단위 민방공대피훈련 - 다중이용시설·업소 대상 화재대피 훈련

4) 훈련분위기 조성

민방위의 날 훈련시에는 시범가로에 민방위기를 게양하였으며 지역·직장 민방위대에서는 민방위 훈련에 따른 현수막 및 입간판을 게첨하고 라디오, 유선방송, 마을앰프, 직장구내방송 등을 활용, 훈련계도 방송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4. 주민신고망 운영

가. 주민신고의 개념

주민신고란 사회를 혼란시켜 우리의 안정된 생활을 파괴하려는 간첩, 무장 게릴라, 거동수상자와 범죄자, 각종 민생치안사범, 법질서 및 각종재해 등 모든 사회적 위험요소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그 피해를 사전에 막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추방하여 국력의 낭비를 막는 국민 각자의 중요한 자율활동이다.

나. 주민신고망 현황

1) 기본신고망

도시지역은 반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직장은 직장민방위대와 예비군을 편성단위로 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2) 이동신고망

일정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근무하는 우편집배원, 도로 하천 감시원, 운전사, 산림 감시원, 외판원, 청소원 등을 이동신고요원으로 위촉 활동하고 있다.

3) 고정신고망 및 특별관리망

시장·상가·유원지 등 다중집합장소와 다중이용업소·집단하숙지역은 고정신고망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특히 주민신고 취약지역인 대공취약 지역에는 특별관리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민신고망 현황

2016년말 기준

계	기본신고망	특별신고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1,242	866	99	171	106

5. 민방위 시설물 관리

가.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하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분되며,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27개소로 소요량 대비 109% 지정되어 있다.

《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

(단위 : 개, m²)

구분	위치별	계	정부지원시설	공공용 지정시설
시설 수		27	-	27
가용면적		52,094	-	52,094
소요량		47,607	-	47,607

나.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 시설은 적의 화생방 공격시 식수 및 생활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며, 민방위 지정 비상급수시설은 8개소로 1일 1,725톤을 생산할 수 있다.

《 비상급수시설 현황 》

계		음용수		생활용수	
확보개소	확보톤수	확보개소	확보톤수	확보개소	확보톤수
8	1,725	5	870	3	855

